제153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7인 발의) 1면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면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서 8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9면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3

제출연월일 : 2005년 8월 26일
제 출 자 : 김성배 의원 외 7인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16058호, 2005. 8. 5)되어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상향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법 개정으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변경함

○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조정(안 제3조 제1항)
- 회기수당 일 70,000원을 일 100,000원으로 30,000원 상향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별표6(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4. 예산수반 사항 : 예산조치 필요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로, 제6조중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로, 【별표 1】〈비 고〉 제3호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 ---------- ---------- ---------- --
제3조(회기수당)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70,000원**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3조(회기수당)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100,000원**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회기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